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수 원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누131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항소인	[redacted]시장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19구합71234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1. 11.
판 결 선 고	2021. 1. 1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12.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117,426,72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6,242,56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2,471,23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12쪽 아래에서 2행의 "타당하다" 다음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11년~2015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내역'(을 제8호증)에 의하면, 2011년~2015년 경기도 내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와 같이 경기도 내에서 일부 납세자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경기도가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번복하는 내용의 확정적인 의사를 표시하였다거나 납세자들이 더 이상 종전의 비과세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질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3-15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